

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 
제5차 외교통일위원회

#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말소된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·관리 〉

■ 김태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3535호)

2025. 11.

외 교 통 일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곽현준

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제안경위 .....         | 1 |
|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| 1 |
| III. 검토의견 .....       | 2 |



## 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태호의원 등 10인

2. 제 안 일 : 2025년 10월 13일

3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13일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,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·관리·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,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·관리하도록 하고,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### 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재외국민등록을 말소<sup>1)</sup>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를 폐쇄하고 보관·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3).

| 현행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의3(등록말소) (생략) | 제9조의3(등록말소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| ②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을 말소하는 경우 재외국민등 록부를 폐쇄하고, 이를 외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· 관리하여야 한다. |
| <신설>             | ③ 제2항에 따라 폐쇄한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에 관 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현행 재외국민등록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,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,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,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.

1) 재외국민등록부 말소자는 2023년('23.6.5.~12.31.) 12,424명, 2024년 21,636명, 2025년(~'25.11.9.) 33,671 명으로 파악됨.

현행법은 등록한 재외국민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<sup>2)</sup>하여, 재외국민 신분 및 체류 상태 변동에 따른 등록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존·활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, 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과거 해외 체류 이력 증명이나 행정기관 간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록의 조회 절차가 불투명한 문제가 존재함.

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등록 말소 후 재외국민등록 기록을 보관·관리하고, 당사자의 요청 시 등본을 교부<sup>3)</sup>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재외국민의 행정상 권익 보호와 국가의 효율적인 행정정보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, 현재에도 국적 상실로 인한 말소자의 경우 말소자 등본을 교부하고 있지는 않으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귀국신고자나 국내 183일 이상 거주자 등 다른 사유의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, 또한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 요청이 있을

## 2) 「재외국민등록법」

제9조의3(등록말소)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
1.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
2.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
3.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
4.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

## 3) 「재외국민등록법」

제7조(재외국민등록부 등본)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(이하 “등록자”라 한다)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.

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,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

경우 국적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.

한편, 개정안에서 ‘등록부 폐쇄’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, 재외국민등록부가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, 물리적 폐쇄 개념보다는 등록 말소 후 기록의 보관·관리로 표현하는 것이 현행 행정실무의 운영방식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.

또한 하위 법령 위임과 관련하여, 등록기록의 보존기간 및 열람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기록물 관리의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므로, 위임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263 |